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28호 2022. 9. 16.(금)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31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632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
남해군 조례 제2633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남해군 조례 제2634호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남해군 조례 제2635호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7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12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9
남해군 규칙 제1213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4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0
남해군 고시 제2022-120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41
남해군 고시 제2022-121호	남해군 택시 운임·요금 조정 고시	45
남해군 고시 제2022-122호	석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46
남해군 고시 제2022-123호	삼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49
남해군 고시 제2022-12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51
남해군 고시 제2022-125호	창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55
남해군 고시 제2022-126호	문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60
남해군 고시 제2022-127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63
남해군 고시 제2022-1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8
남해군 고시 제2022-1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9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112호	삼천포 천연가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70
남해군 공고 제2022-1132호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72
남해군 공고 제2022-1137호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82
남해군 공고 제2022-1138호	월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89
남해군 공고 제2022-1144호	남해군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 시행 공고	92
남해군 공고 제2022-1145호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공고	94
남해군 공고 제2022-1157호	2022년 남해군 해수욕장 야영장 수탁 단체 선정 공고	96
남해군 공고 제2022-117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97
남해군 공고 제2022-1178호	공시송달 공고	98
남해군 공고 제2022-117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01
남해군 공고 제2022-118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02
남해군 공고 제2022-1191호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03

회 랑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31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9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남해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실장, 단장,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단장·과장의 직급과 실장·단장·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의 분장 사무는 정책개발과 군정기획, 협력조정, 예산, 홍보·미디어, 감사, 법무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부군수 밑에 핵심전략추진단을 둔다.

④ 핵심전략추진단의 분장 사무는 해저터널 사업 추진, 투자전략, 청사신축, 청년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해양환경국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재무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 후생, 향우대외협력, 교육협력, 정보전산, 통신관제에 관한 사항
2.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장사문화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장애인지원, 여성보육,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부과, 경리, 재산관리, 세입관리,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제6조(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진흥과, 경제과,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광정책, 관광개발, 관광프로젝트,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일자리공동체, 정착지원, 에너지,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행정,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행정, 건축민원, 복합민원,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설관리, 농업기반, 도로, 교통에 관한 사항

제7조(해양환경국) ① 해양환경국에 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② 해양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정책, 어항관리, 해양보전, 해양레저에 관한 사항
2. 어업진흥, 수산물유통가공, 스마트양식, 자원조성, 어업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자원순환, 환경지도,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4. 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하천관리,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관리운영, 급수운영,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

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보건행정의 기획조정과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에 관한사항
3.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4.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안전에 관한 사항
5. 건강생활실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보건 및 의료기관 약국 등에 관한 사항
8. 치매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에 둔다.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농업정책, 인력육성, 축산정책,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 2. 유통수출, 통합마케팅, 먹거리지원, 농촌자원, 소득개발에 관한 사항
- 3. 환경농업, 식량작물, 원예특작, 마늘, 농기계관리에 관한 사항
- 4.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제4장 읍·면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남해군 보건소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 일원
남해군 이동면 보건지소	이동면 무림로 64-5	이동면 일원
남해군 상주면 보건지소	상주면 남해대로 716	상주면 일원
남해군 삼동면 보건지소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가길 11-9	삼동면 일원
남해군 미조면 보건지소	미조면 미조로236번길 41	미조면 일원
남해군 남면 보건지소	남면 남서대로 778-11	남면 일원
남해군 서면 보건지소	서면 남서대로1687번길 28-4	서면 일원
남해군 고현면 보건지소	고현면 탑동로 43	고현면 일원
남해군 설천면 보건지소	설천면 설천로 654	설천면 일원
남해군 창선면 보건지소	창선면 창선로 60-9	창선면 일원
시문보건진료소	삼동면 난음로 338	시문, 영지, 수곡, 고암, 갈현
동천 보건진료소	삼동면 동부대로 1287	동천, 금천, 양화금, 내동천, 물건은점, 둔촌, 삼화, 봉화, 화암, 내산화천, 대지포
가인포보건진료소	미조면 동부대로 461	노구, 가인포, 향도, 초전
홍현보건진료소	남면 남면로 355-5	홍현1, 무지개, 다랭이
선구보건진료소	남면 남면로 1163	선구, 향촌, 사촌, 운암, 임포
덕월보건진료소	남면 남서대로1180번길 18	구민, 덕월, 남구, 북구
남상보건진료소	서면 남서대로2197번길 6	중리, 상남, 작장, 남상, 염해
중현보건진료소	서면 남서대로2618번길 6	중현, 회룡, 정포, 노구, 도산, 현촌, 우물, 유포
노량보건진료소	설천면 노량로 198	노량, 덕신, 감암, 월곡, 왕지
대벽보건진료소	창선면 서부로1244번길 16	대벽, 냉천, 단항, 소벽
율도보건진료소	창선면 율도로 199	율도, 고순, 서대, 당항
광천보건진료소	창선면 서부로 432-1	광천, 사포, 신흥, 보천
연곡보건진료소	창선면 연곡로 25	부윤1·2, 연곡, 오용
고두보건진료소	창선면 흥선로 633번길 4	식포, 언포, 고두, 가인
적량보건진료소	창선면 흥선로1198번길 10	적량, 대곡, 장포

남해군 조례 제2632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9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76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646					
4급	5	4		1		
5급	37	17	3	2	5	10
6급이하 소계	602					
전문경력관	2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7					

남해군 조례 제2633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9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 를 “제10조의2”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을 “(사용허가의 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를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수익” 을 “사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 를 각각 “사용허가” 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를 “(사용허가부의 비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대장” 을 “사용허가대장”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범위)” 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범위)” 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기간에는 제3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634호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9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남해탈공연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탈공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12에 둔다.

제3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① 박물관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관장 및 운영인력) 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담당 부서의 장이 겸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및 이용료 등) ① 군수는 박물관에 입장하여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기획공연 등 관람료)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박물관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해 제5조의 관람료와는 별도로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 2. 박물관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 3.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 음주, 취식 등 관람여건을 훼손하는 행위
- 2. 전시품 및 소장품, 박물관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 4. 저작권 등으로 인하여 촬영금지가 명시된 전시품을 촬영하는 행위
- 5.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박물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나 시설물 이용자가 박물관의 전시물, 소장품, 각종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박물관 관련 상품, 남해군의 농·수·특산물 등의 물품판매점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보존 및 관리) ① 관장은 박물관 소장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장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품의 취득 및 변경,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소장품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의 이용) ① 관장은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대한 촬영 및 복사 등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소장품의 대여)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관장은 소장품을 대여할 때에는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반입·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6조(대여 소장품의 변상 등) 제15조에 따라 대여한 소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수탁 및 임시보관)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위탁받아 보관·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절차는 소장품 수증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박물관에 임시보관 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기획전시 등 각종 행사를 위한 개인 및 다른 기관 소장품
2. 개인 및 다른 기관과의 공동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자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8조(기증 접수) ① 관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을 때에는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기증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관장은 제18조에 따른 박물관 자료의 수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 여부를 심사한다.

1. 대상 박물관 자료의 소장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20조(기증서 교부) 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기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21조(수증 조건) 수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 관련 기획전시, 관련 학술행사 및 서적 발간 등 기증자의 예우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수증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 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자료 또는 박물관 자료로서의 가치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제23조(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담당 업무 국장,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박물관 운영·공연예술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에 따라 관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3.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또는 서면, 영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해탈공연박물관 전시 관람료(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금액		비 고
	개인	단체 (20인 이상)	
일반인	2,000원	1,500원	19세 이상 ~ 64세 이하의 자
청소년, 군인	1,500원	1,000원	13세 이상 ~ 18세 이하의 자 (학생증 소지 중·고·대학생포함), 군인(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 포함, 단기하사 이하)
어린이	1,000원	500원	7세 이상 ~ 12세 이하의 자

[별표 2]

남해탈공연박물관 시설 이용료(제5조제3항 관련)

※ 실내공연장 기본 이용시간 및 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 1. 기본 이용시간 : 1회 3시간 기준
- 2. 기본 이용료 : 1회 100,000원
- 3. 이용시간 초과 시 금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시간 미만	20,000원	1회 이용료의 20%를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40,000원	1회 이용료의 40%를 가산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60,000원	1회 이용료의 60%를 가산
3시간 이상	100,000원	1회 이용료의 100%를 가산

[별표 3]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람료 감면 대상(제5조제4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률	비 고
국민,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100분의 100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100분의 100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내·외국인	100분의 100	
입장일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00분의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100분의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및 활동 보조자	100분의 10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부상자의 활동 보조자	100분의 1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100분의 10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0분의 10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0분의 10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00분의 10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상자가족, 의사자유족 및 활동 보조자	100분의 10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100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00분의 10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00분의 100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00분의 100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부모	100분의 100	
기타 개별법령 및 남해군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법령별 감면율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0분의 100	

[별표 4]

남해탈공연박물관 소장품 이용료(제14조 관련)

구 분	기 준	단 위	금 액	비 고
사 진 촬 영	1	점	20,000원	
영 상 촬 영	1	점	20,000원	
디지털데이터	1	파일	10,000원	
게 재 허 가	1	건	5,000원	

※ 소장품 이용료는 해당 소장품의 저작권, 초상권 등 제작자의 권리와는 관련없음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박물관 자료 기증신청서

연 번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합 계: 건 점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의 박물관 자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한을 남해탈공연박물관에 정히 기증하며, 기증 이후 본 자료를 남해탈공연박물관 운영 정책에 따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

연번	명 칭	수 량	평 가 결 과	비 고
합계: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남해탈공연박물관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박물관 자료 기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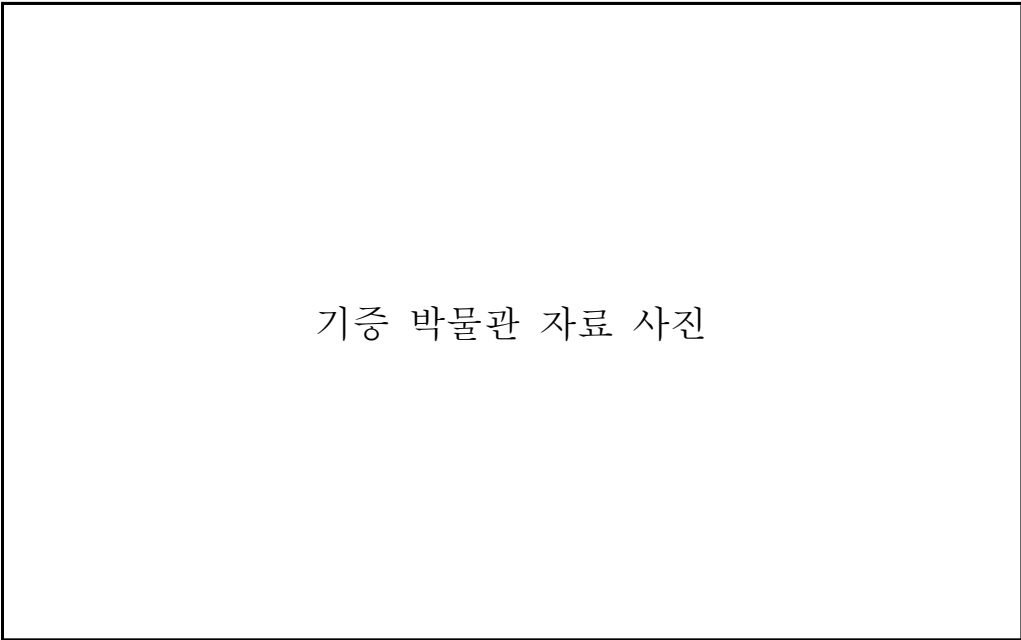
○○○ 귀하

귀하가 기증하신 ○○○○등 ○건 ○점을 남해탈공연박물관이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박물관자료를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0 0 0 기증 박물관 자료



명 칭	수 량
계	건 점

남해군 조례 제2635호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9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남해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12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2022년 9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실장, 단장은 부군수를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장·실장·단장·과장 등의 직급) 본청의 국장·실장·단장·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주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관광경제국: 관광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 · 도시건축과장 또는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해양환경국: 해양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양발전과장 · 수산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환경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핵심전략추진단: 핵심전략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실장·단장·과장 등의 사무분장) 실장·단장·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5조(소장 등) ① 남해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 29조의4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또는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남해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건강정책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2. 건강증진과장: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8조(소장의 직급)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산림공원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 유통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3. 농업기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0조(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의 분장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4장 읍·면

제11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남해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이동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상주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4. 삼동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5. 미조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6. 남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7. 서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8. 고현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9. 설천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0. 창선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부읍·면장) ①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부면장을 둔다.

- ② 부읍장·부면장은 총무업무를 겸임하며, 직급 및 직렬은 다음과 같다.
1. 남해읍부읍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2. 이동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3. 상주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
 4. 삼동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5. 미조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6. 남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7. 서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8. 고현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9. 설천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10. 창선면부면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제13조(분장사무) 읍면의 분장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별표4] : 남해군 홈페이지 참고

남해군 규칙 제1213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2022년 9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소계	의회 사무 과	직속기관		읍면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읍	면
총	계	합 계	676	365	16	68	73	19	135
		정무직	1	1					
		일반직	646	362	16	68	46	19	135
		별정직	1	1					
		연구직	1	1					
		지도직	27			27			
정무직 계	군수	정무직	1						
일반직 계			646	362	16	68	46	19	135
일반직	4급 합계		5	4		1			
일반직	4급	서기관	2	2					
일반직	4급	서기관·기술서기관	2	2					
일반직	4급	기술서기관	1			1			
일반직	5급 합계		37	17	3	2	5	1	9
일반직	5급	행정	5	4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	2	2					
일반직	5급	행정·해양수산	3	2				1	
일반직	5급	행정·시설	6	6					
일반직	5급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					1	2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해양수산·보건	1		1				
일반직	5급	행정·시설·해양수산·보건	1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1					1	
일반직	5급	행정·복지·시설	2					2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환경·시설	2	2					
일반직	5급	농업·농촌지도							
일반직	5급	행정·농업·농촌지도	3				3		
일반직	5급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복지·농촌지도	1				1		
일반직	5급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일반직	5급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	1			1			
일반직	6급 합계		166	91	5	12	16	5	37
일반직	6급	행정	24	18	5			1	
일반직	6급	세무	1	1					
일반직	6급	해양수산	6	6					
일반직	6급	보건진료	3			3			
일반직	6급	시설	6	6					
일반직	6급	행정·전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	3	3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소계	의회 사무 과	직속기관		읍면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읍	면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	9	9					
일반직	6급	행정·사서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전산	7						7
일반직	6급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	10	1					9
일반직	6급	행정·농업·공업	2	2					
일반직	6급	행정·농업·공업·녹지	2	2					
일반직	6급	행정·녹지	1						1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	3	3					
일반직	6급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일반직	6급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일반직	6급	행정·보건·환경·농업	1	1					
일반직	6급	행정·보건·환경·공업							
일반직	6급	행정·시설	22	21					1
일반직	6급	보건·간호·의료기술	6			6			
일반직	6급	행정·농업·수의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일반직	6급	농업·녹지	1				1		
일반직	6급	농업·농촌지도	3				3		
일반직	6급	행정·세무·농업	3					1	2
일반직	6급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시설·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보건	5	1					4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녹지	4				4		
일반직	6급	행정·환경	3	3					
일반직	6급	행정·농업·시설	9	4					5
일반직	6급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농촌지도	5				5		
일반직	6급	농업·공업·농촌지도	1				1		
일반직	6급	행정·녹지·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환경·시설	3	3					
일반직	6급	행정·농업·해양수산	2						2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운전	1	1					
일반직	6급	통신운영	1	1					
일반직	6급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7급 합계		196	112	4	30	9	8	33
일반직	7급	행정	32	21	3			2	6
일반직	7급	세무	6	2				1	3
일반직	7급	사회복지	10	3				1	6
일반직	7급	전산	1	1					
일반직	7급	공업	6	5					1

남 해 군 공 보

(38) 제 728 호

2022년 9월 16일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소계	의회 사무 과	직속기관		읍면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읍	면
일반직	7급	해양수산	8	8					
일반직	7급	보건	8			8			
일반직	7급	의료기술	1			1			
일반직	7급	간호	8			8			
일반직	7급	보건진료	9			9			
일반직	7급	환경	3	3					
일반직	7급	시설	14	13				1	
일반직	7급	행정·세무·전산	2	2					
일반직	7급	행정·세무·농업	4	1					3
일반직	7급	행정·전산·농업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	14	6				2	6
일반직	7급	행정·농업	7				3		4
일반직	7급	행정·농업·녹지	7	2			4		1
일반직	7급	행정·농업·수의	1				1		
일반직	7급	행정·보건·의료기술	2			2			
일반직	7급	행정·환경	3	3					
일반직	7급	행정·시설	23	23					
일반직	7급	세무·전산	1	1					
일반직	7급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행정·해양수산·시설	4	4					
일반직	7급	농업·시설	3	2					1
일반직	7급	보건·간호	1			1			
일반직	7급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일반직	7급	보건·환경							
일반직	7급	행정·환경·시설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일반직	7급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행정·녹지·시설	2	2					
일반직	7급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1	1
일반직	7급	운전	7	6	1				
일반직	7급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7급	녹지							
일반직	8급 합계		163	93	3	20	9	3	35
일반직	8급	행정	27	19	1		1	1	5
일반직	8급	세무	3	2					1
일반직	8급	사회복지	13	6				1	6
일반직	8급	전산	1	1					
일반직	8급	농업	3				3		
일반직	8급	녹지	2	1			1		
일반직	8급	해양수산	11	11					
일반직	8급	환경	3	3					
일반직	8급	보건·세무							
일반직	8급	의료기술	5			5			
일반직	8급	보건진료	6			6			
일반직	8급	시설	14	10					4
일반직	8급	방재안전	1	1					
일반직	8급	행정·세무	5	2					3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소계	의회 사무 과	직속기관		읍면	
						보건 소	농업 기술 센터	읍	면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	8	3					5
일반직	8급	행정·농업·시설	14	3			2	1	8
일반직	8급	행정·전산	2	2					
일반직	8급	행정·해양수산·전산	2	2					
일반직	8급	행정·전산·사서	1	1					
일반직	8급	행정·환경	3	2					1
일반직	8급	행정·시설	10	10					
일반직	8급	행정·시설·공업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복지·시설	1	1					
일반직	8급	농업·복지	2				2		
일반직	8급	전산·방송통신	3	3					
일반직	8급	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8급	보건·간호	8			8			
일반직	8급	행정·보건·환경							
일반직	8급	운전	7	6		1			
일반직	8급	속기	2		2				
일반직	8급	공업	5	3					2
일반직	9급 합계		77	45	1	3	5	2	21
일반직	9급	행정	20	13	1				6
일반직	9급	세무	4	2					2
일반직	9급	사회복지	8	3				1	4
일반직	9급	농업	2				2		
일반직	9급	해양수산	3	3					
일반직	9급	환경	3	3					
일반직	9급	시설	5	2					3
일반직	9급	방재안전	1	1					
일반직	9급	의료기술	1			1			
일반직	9급	행정·시설	10	10					
일반직	9급	행정·세무·전산	2	1					1
일반직	9급	행정·사회복지	5	4					1
일반직	9급	행정·해양수산	1	1					
일반직	9급	행정·농업·복지·공업	7	2			2		3
일반직	9급	행정·전산·보건	1			1			
일반직	9급	운전	2			1	1		
일반직	9급	사무운영	2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농기계교관	2				2		
별정직 계	별정6급상당	일반비서	1	1					
연구직 계	연구사	기록연구	1	1					
지도직 계	지도사	농촌지도	27				27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9일

남 해 군 수

- 1. 하 천 명 : 금양천(지방하천)
- 2. 성 명 : 엄민0
-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평현로00
- 4. 점용목적 : 진입로 및 우수관로매설
- 5. 점용위치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82(958관련)
- 6. 점용면적 : 37㎡
- 7. 점용기간 : 2022. 8. 29. ~ 2026. 12. 31.

남해군 고시 제2022-120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99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연번
1	19491	도근점	중부	252435.189	19.722	128°00'24.8801"	34°51'49.2824"	2022.07.15	창선면 상신리 648	철재	남해군정		90
2	19492	도근점	중부	252439.888	18.242	128°00'25.9975"	34°51'49.4256"	2022.07.15	창선면 상신리 237-1	철재	남해군정		
3	19493	도근점	중부	252385.812	15.082	128°00'28.2083"	34°51'47.6525"	2022.07.15	창선면 상신리 292	철재	남해군정		
4	19494	도근점	중부	252406.822	13.133	128°00'32.8471"	34°51'48.2958"	2022.07.15	창선면 상신리 653	표석	남해군정		
5	19495	도근점	중부	252517.556	13.415	128°00'31.5563"	34°51'51.8997"	2022.07.15	창선면 상신리 653	철재	남해군정		
6	19496	도근점	중부	252628.476	13.727	128°00'29.9471"	34°51'55.5123"	2022.07.15	창선면 상신리 653	철재	남해군정		
7	19497	도근점	중부	252707.969	10.548	128°00'29.6032"	34°51'58.0946"	2022.07.15	창선면 상신리 433-9	철재	남해군정		
8	19498	도근점	중부	252856.145	8.361	128°00'30.2240"	34°52'02.8976"	2022.07.15	창선면 상신리 1041	철재	남해군정		
9	16427	도근점	중부	247067.259	40.711	127°51'20.47693"	34°48'59.26589"	2022.07.15	서면 서호리 682-1	철재	남해군정		91
10	16428	도근점	중부	247057.184	39.773	127°51'17.46584"	34°48'58.96011"	2022.07.15	서면 서호리 902-21	철재	남해군정		
11	16429	도근점	중부	246994.217	33.254	127°51'16.87390"	34°48'56.92103"	2022.07.15	서면 서호리 610-2	철재	남해군정		
12	16430	도근점	중부	246974.781	34.143	127°51'20.21271"	34°48'56.26687"	2022.07.15	서면 서호리 902-21	철재	남해군정		
13	16431	도근점	중부	247040.856	38.877	127°51'20.95783"	34°48'58.40574"	2022.07.15	서면 서호리 673-2	철재	남해군정		
14	16432	도근점	중부	249899.857	269.850	127°49'39.1319"	34°50'31.8834"	2022.07.15	서면 남상리 산193	PVC	남해군정		92
15	16433	도근점	중부	249865.927	269.459	127°49'38.1028"	34°50'30.7894"	2022.07.15	서면 남상리 산213		남해군정		
16	16434	도근점	중부	249844.068	270.238	127°49'36.8931"	34°50'30.0883"	2022.07.15	서면 남상리 산211-1	철재	남해군정		
17	16435	도근점	중부	250172.355	117.599	127°49'25.5649"	34°50'40.8179"	2022.07.15	서면 남상리 122-5	철재	남해군정		
18	16436	도근점	중부	250179.645	107.440	127°49'23.5744"	34°50'41.0679"	2022.07.15	서면 남상리 125	철재	남해군정		
19	16437	도근점	중부	250156.543	95.319	127°49'20.1973"	34°50'40.3411"	2022.07.15	서면 남상리 122-5	철재	남해군정		
20	15292	도근점	중부	243022.632	67.199	127°52'06.2085"	34°46'47.6955"	2022.07.19	남면 상가리 822	철재	남해군정		93
21	15293	도근점	중부	243024.736	60.428	127°52'09.0692"	34°46'47.7433"	2022.07.19	남면 상가리 820-1	철재	남해군정		
22	15294	도근점	중부	243066.575	55.630	127°52'09.0827"	34°46'49.1009"	2022.07.19	남면 상가리 819-6	각인	남해군정		
23	15295	도근점	중부	240491.819	81.035	127°53'27.0908"	34°45'24.9870"	2022.07.21	남면 석교리 산 106	철재	남해군정		94
24	15296	도근점	중부	240504.081	80.255	127°53'28.3809"	34°45'25.3754"	2022.07.21	남면 석교리 산 102	철재	남해군정		
25	15297	도근점	중부	240524.311	79.516	127°53'29.6627"	34°45'26.0225"	2022.07.21	남면 석교리 산 102	철재	남해군정		
26	15298	도근점	중부	240594.946	71.657	127°53'32.6595"	34°45'28.2926"	2022.07.21	남면 석교리 1398-1	철재	남해군정		
27	15299	도근점	중부	240662.784	69.257	127°53'34.5854"	34°45'30.4798"	2022.07.21	남면 석교리 산 95	철재	남해군정		
28	15300	도근점	중부	238479.792	98.423	127°51'37.8572"	34°44'20.4826"	2022.07.27	남면 선구리 811	철재	남해군정		95
29	15301	도근점	중부	238481.804	90.753	127°51'36.5986"	34°44'20.5567"	2022.07.27	남면 선구리 881-3	철재	남해군정		
30	15302	도근점	중부	238510.437	71.784	127°51'32.3822"	34°44'21.5156"	2022.07.27	남면 선구리 845	철재	남해군정		
31	18249	도근점	중부	260550.182	43.516	127°54'20.21973"	34°56'15.47293"	2022.07.27	살천면 문의리 1481	철재	남해군정		96
32	18250	도근점	중부	260511.369	54.736	127°54'19.65842"	34°56'14.21769"	2022.07.27	살천면 문의리 961	철재	남해군정		
33	18251	도근점	중부	260584.186	43.891	127°54'18.22664"	34°56'16.59120"	2022.07.27	살천면 문의리 960-1	철재	남해군정		
34	17438	도근점	중부	255583.618	52.406	127°53'14.58039"	34°53'34.79780"	2022.08.01	고현면 오푼리 54	철재	남해군정		97
35	17439	도근점	중부	255558.549	46.899	127°53'14.42396"	34°53'33.98544"	2022.08.01	고현면 오푼리 481	철재	남해군정		
36	10343	도근점	중부	251042.874	33.469	127°53'31.14405"	34°51'07.33343"	2022.08.02	남해읍 삼천리 1287-1	철재	남해군정		98
37	10344	도근점	중부	251041.173	33.416	127°53'33.64706"	34°51'07.25986"	2022.08.02	남해읍 삼천리 834-2	철재	남해군정		
38	17440	도근점	중부	257858.561	71.491	127°51'38.68030"	34°54'49.30713"	2022.08.04	고현면 차머리 산76-38	철재	남해군정		99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제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연번
39	17441	도근점	중부	257891.931	60.317	127°51'36.31103"	34°54'50.40672"	2022.08.04	고현면 치면리 산176-37	철재	남해군정		
40	17442	도근점	중부	257848.648	55.900	127°51'36.86797"	34°54'48.99830"	2022.08.04	고현면 치면리 산176-1	철재	남해군정		
41	17443	도근점	중부	257806.011	55.711	127°51'37.92060"	34°54'47.60732"	2022.08.04	고현면 치면리 산176-11	철재	남해군정		
42	10345	도근점	중부	246419.989	103.171	127°53'07.1509"	34°48'37.4991"	2022.08.08	남해읍 평현리 1624-1	철재	남해군정		100
43	10346	도근점	중부	246469.840	99.121	127°53'05.9818"	34°48'39.1253"	2022.08.08	남해읍 평현리 1638-1	철재	남해군정		
44	10347	도근점	중부	246519.738	94.322	127°53'04.8966"	34°48'40.7523"	2022.08.08	남해읍 평현리 1652-2	철재	남해군정		
45	18252	도근점	중부	255745.187	41.134	127°54'55.8911"	34°53'39.2893"	2022.08.11	설천면 진목리 산99-7	철재	남해군정		101
46	18253	도근점	중부	255798.870	39.184	127°54'55.6575"	34°53'41.0327"	2022.08.11	설천면 진목리 182-3	철재	남해군정		
47	18254	도근점	중부	255839.543	39.755	127°54'53.4945"	34°53'42.3687"	2022.08.11	설천면 진목리 191-6	철재	남해군정		
48	18255	도근점	중부	255873.311	37.015	127°54'53.1046"	34°53'43.4676"	2022.08.11	설천면 진목리 191-4	철재	남해군정		
49	10348	도근점	중부	248406.336	32.557	127°55'04.31711"	34°49'41.08657"	2022.08.17	남해읍 임현리 714	철재	남해군정		102
50	10349	도근점	중부	248437.636	23.954	127°55'03.46478"	34°49'42.10866"	2022.08.17	남해읍 임현리 707-3	철재	남해군정		
51	10350	도근점	중부	248447.781	16.320	127°54'59.11610"	34°49'42.47064"	2022.08.17	남해읍 임현리 1623-1	계수변환	남해군정		
52	10351	도근점	중부	248585.722	12.620	127°54'58.17627"	34°49'46.95580"	2022.08.17	남해읍 임현리 1634-4	철재	남해군정		
53	10352	도근점	중부	248724.241	10.715	127°54'57.28855"	34°49'51.45534"	2022.08.17	남해읍 임현리 486-3	철재	남해군정		
54	10353	도근점	중부	248881.497	7.954	127°55'01.69659"	34°49'56.52497"	2022.08.17	남해읍 임현리 1623-1	철재	남해군정		
55	17444	도근점	중부	253028.733	142.393	127°51'49.22856"	34°52'12.50870"	2022.08.18	고현면 대곡리 1230-4	철재	남해군정		103
56	17445	도근점	중부	253064.450	133.514	127°51'49.70599"	34°52'13.66433"	2022.08.18	고현면 대곡리 1456-1	철재	남해군정		
57	17446	도근점	중부	253057.227	135.166	127°51'50.73338"	34°52'13.42262"	2022.08.18	고현면 대곡리 1419-1	철재	남해군정		
58	17447	도근점	중부	253027.467	135.059	127°51'51.63161"	34°52'12.45054"	2022.08.18	고현면 대곡리 1230-13	철재	남해군정		
59	17448	도근점	중부	252983.155	140.095	127°51'54.19366"	34°52'10.99446"	2022.08.18	고현면 대곡리 1230-16	철재	남해군정		
60	10354	도근점	중부	248165.172	21.395	127°55'36.99616"	34°49'33.01321"	2022.08.22	이동면 조음리 1895	철재	남해군정		104
61	10355	도근점	중부	248161.485	21.040	127°55'32.20201"	34°49'32.93007"	2022.08.22	남해읍 임현리 70	철재	남해군정		
62	10356	도근점	중부	248098.804	25.578	127°55'34.61165"	34°49'30.87777"	2022.08.22	이동면 조음리 1884	철재	남해군정		
63	16438	도근점	중부	252680.268	94.417	127°49'58.75817"	34°52'01.97202"	2022.08.23	서면 중현리 1124-1	철재	남해군정		105
64	16439	도근점	중부	252638.333	101.874	127°49'59.65401"	34°52'00.60512"	2022.08.23	서면 중현리 산178-9	철재	남해군정		
65	16440	도근점	중부	252677.833	102.543	127°50'00.47182"	34°52'01.88127"	2022.08.23	서면 중현리 산178-9	철재	남해군정		
66	10340	도근점	중부	249856.049	85.569	127°53'11.98655"	34°50'28.96191"	2022.07.27	남해읍 아산리 301-2	철재	남해군정		특21
67	10341	도근점	중부	249772.808	68.041	127°53'13.41553"	34°50'26.25039"	2022.07.27	남해읍 아산리 307	철재	남해군정		
68	10342	도근점	중부	249746.847	61.785	127°53'13.48074"	34°50'25.40749"	2022.07.27	남해읍 아산리 1432	철재	남해군정		
69	13374	도근점	중부	246403.896	26.861	127°59'06.9173"	34°48'34.2116"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884-2	철재	남해군정		특22
70	13375	도근점	중부	246379.909	28.903	127°59'10.5640"	34°48'33.4037"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884-1	철재	남해군정		
71	13376	도근점	중부	246361.720	39.141	127°59'14.8637"	34°48'32.7786"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301-6	철재	남해군정		
72	13377	도근점	중부	246332.148	48.110	127°59'19.3904"	34°48'31.7823"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98-5	철재	남해군정		
73	13378	도근점	중부	246334.571	48.126	127°59'22.3384"	34°48'31.8369"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98-2	철재	남해군정		
74	13379	도근점	중부	246302.951	37.381	127°59'28.6354"	34°48'30.7596"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96-2	철재	남해군정		
75	13380	도근점	중부	246294.447	34.864	127°59'32.0966"	34°48'30.4555"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91-5	철재	남해군정		
76	13381	도근점	중부	246321.954	40.802	127°59'38.3654"	34°48'31.2969"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88-4	철재	남해군정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연번
77	13382	도근점	중부	246313.325	44.217	127°59'42.4479"	34°48'30.9835"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391-4	철재	남해군청		
78	13383	도근점	중부	246270.760	53.173	127°59'46.2475"	34°48'29.5712"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227-4	철재	남해군청		
79	13384	도근점	중부	246212.724	60.337	127°59'48.3651"	34°48'27.6707"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223-10	철재	남해군청		
80	13385	도근점	중부	246145.122	64.429	127°59'51.8575"	34°48'25.4484"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83-1	철재	남해군청		
81	13386	도근점	중부	246159.057	69.894	127°59'56.4676"	34°48'25.8628"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70-29	철재	남해군청		
82	13387	도근점	중부	246120.755	74.663	128°00'00.1542"	34°48'24.5896"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70-2	철재	남해군청		
83	13388	도근점	중부	246140.449	80.685	128°00'03.7525"	34°48'25.1991"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68-6	철재	남해군청		
84	13389	도근점	중부	246107.618	90.260	128°00'08.1274"	34°48'24.0977"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65-2	철재	남해군청		
85	13390	도근점	중부	246022.372	108.785	128°00'14.4507"	34°48'21.2795"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63-3	철재	남해군청		
86	13391	도근점	중부	245978.376	112.802	128°00'17.2045"	34°48'19.8291"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67-2	철재	남해군청		
87	13392	도근점	중부	245837.035	108.350	128°00'23.3375"	34°48'15.1920"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12-2	철재	남해군청		
88	13393	도근점	중부	245839.539	105.641	128°00'25.5794"	34°48'15.2547"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12-6	철재	남해군청		
89	13394	도근점	중부	245868.714	100.021	128°00'30.1542"	34°48'16.1636"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14-4	철재	남해군청		
90	13395	도근점	중부	245901.306	93.128	128°00'33.8766"	34°48'17.1903"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74-2	철재	남해군청		
91	13396	도근점	중부	245896.035	87.921	128°00'36.7609"	34°48'16.9953"	2022.06.21	삼동면 영지리 산215-2	철재	남해군청		
92	13397	도근점	중부	245797.644	81.297	128°00'42.5176"	34°48'13.7548"	2022.06.21	삼동면 불화리 683	철재	남해군청		
93	13398	도근점	중부	245854.715	80.713	128°00'42.9130"	34°48'15.6340"	2022.06.21	삼동면 불화리 산140-5	철재	남해군청		
94	13399	도근점	중부	245840.569	72.794	128°00'47.9282"	34°48'15.1026"	2022.06.21	삼동면 불화리 산140-7	철재	남해군청		
95	13400	도근점	중부	245920.300	51.314	128°00'55.7393"	34°48'17.6247"	2022.06.21	삼동면 불화리 459-5	철재	남해군청		
96	13401	도근점	중부	245939.371	46.470	128°00'57.5075"	34°48'18.2288"	2022.06.21	삼동면 불화리 766-2	철재	남해군청		
97	13402	도근점	중부	245792.245	25.133	128°01'26.2940"	34°48'13.2134"	2022.06.21	삼동면 불화리 980-2	철재	남해군청		
98	13403	도근점	중부	245806.296	26.104	128°01'23.9816"	34°48'13.6888"	2022.06.21	삼동면 불화리 971-2	철재	남해군청		
99	13404	도근점	중부	245821.621	28.027	128°01'20.3019"	34°48'14.2170"	2022.06.21	삼동면 불화리 845-1	철재	남해군청		

남해군 고시 제2022-121호

남해군 택시 운임·요금 조정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금의 결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제4조(운임·요금의 결정·조정 원칙)에 의거 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할 남해군 택시 운임·요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일

남 해 군 수

1. 목적

본 고시는 영업용 택시의 요금을 인상하여 현행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적용지역 : 남해군 전역

3. 조정내용

구 분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기본요금	4,000원	4,700원	
단위거리	143m/150원	133m/150원	
단위시간	34초	34초	변동없음
심야할증	20%	20%	변동없음
군계외 할증	20%	30%	

4. 시행일 : 2022. 11. 1.(화) 00:00부터 시행

남해군 고시 제2022-122호

석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석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어촌·어항법」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석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원주민과 청년이 만나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주민 문화활동 확대, 농·어가 소득 증대
3. 위치 : 남해군 남면 석교리 석교·월포마을 일원
4. 사업 기간 : 2021년 ~ 2025년(5년간)
5. 총 사업비 : 5,327백만원(국비 3,729 / 지방비 1,598) * 자부담95 별도
6.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7. 사업 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석교발전 플랫폼(공통) (석교발전 플랫폼 신축 A=485㎡, 외부공간조성 A=459㎡)

- 청년휴식 플랫폼 (청년휴식 플랫폼 신축 A= 268㎡, 외부공간조성 A= 250㎡)
- 지역소득증대
 - 석교발전 플랫폼(소득) (석교발전 플랫폼 신축 A=100㎡)
- 지역경관개선
 - 청년골목 경관개선 (L=2,754m, 아스콘 깔기 A=3,432㎡ 등 경관정비)
 - 바다산책 환경조성 (막구조물 설치 1개소, 바닥정비)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경영지원, 부대비용 등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4)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별첨

석교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편입·사용토지 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m ²)	편입·사용 면적(m ²)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석교발전 플랫폼									
1	남해	남면	석교리	740	6	답	2,360	1,337	
청년휴식 플랫폼									
2	남해	남면	석교리	149	-	임야	2,621	2,621	
청년골목 경관개선									
3	남해	남면	석교리	740	5	대	122	31	
4	남해	남면	석교리	740	6	답	2,360	252	
5	남해	남면	석교리	741	3	대	659	9	
6	남해	남면	석교리	742	3	대	70	51	
7	남해	남면	석교리	743	-	대	221	55	
8	남해	남면	석교리	958	3	대	235	235	
9	남해	남면	석교리	956	5	대	246	12	
10	남해	남면	석교리	1538	-	도로	1,337	191	
11	남해	남면	석교리	1539	-	도로	1,971	801	
12	남해	남면	석교리	1540	-	도로	967	319	
13	남해	남면	석교리	1533	2	구거	3,496	298	
14	남해	남면	석교리	23	-	구거	29,861	18	
15	남해	남면	석교리	1025	-	도로	621	293	
16	남해	남면	석교리	1037	-	도로	1,320	631	
17	남해	남면	석교리	1532	5	도로	1,370	156	
18	남해	남면	석교리	1539	8	도로	661	80	
바다산책 환경조성									
19	남해	남면	석교리	47-8	8	임야	2,442	2,442	
20	남해	남면	석교리	47-5	5	임야	886	886	
계				20필지			53,826	10,718	

남해군 고시 제2022-123호

삼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

가. 지정 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삼화 지구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29일원	침수 위험	나	80,912	삼화천(지방) 및 장골천(수) 하천 통수단 면 부족 및 하천시설물 능력부족으로 월류에 의한 주거시설 및 농경지 침수	

나. 지정 지형도면 : 붙임참조

다. 지정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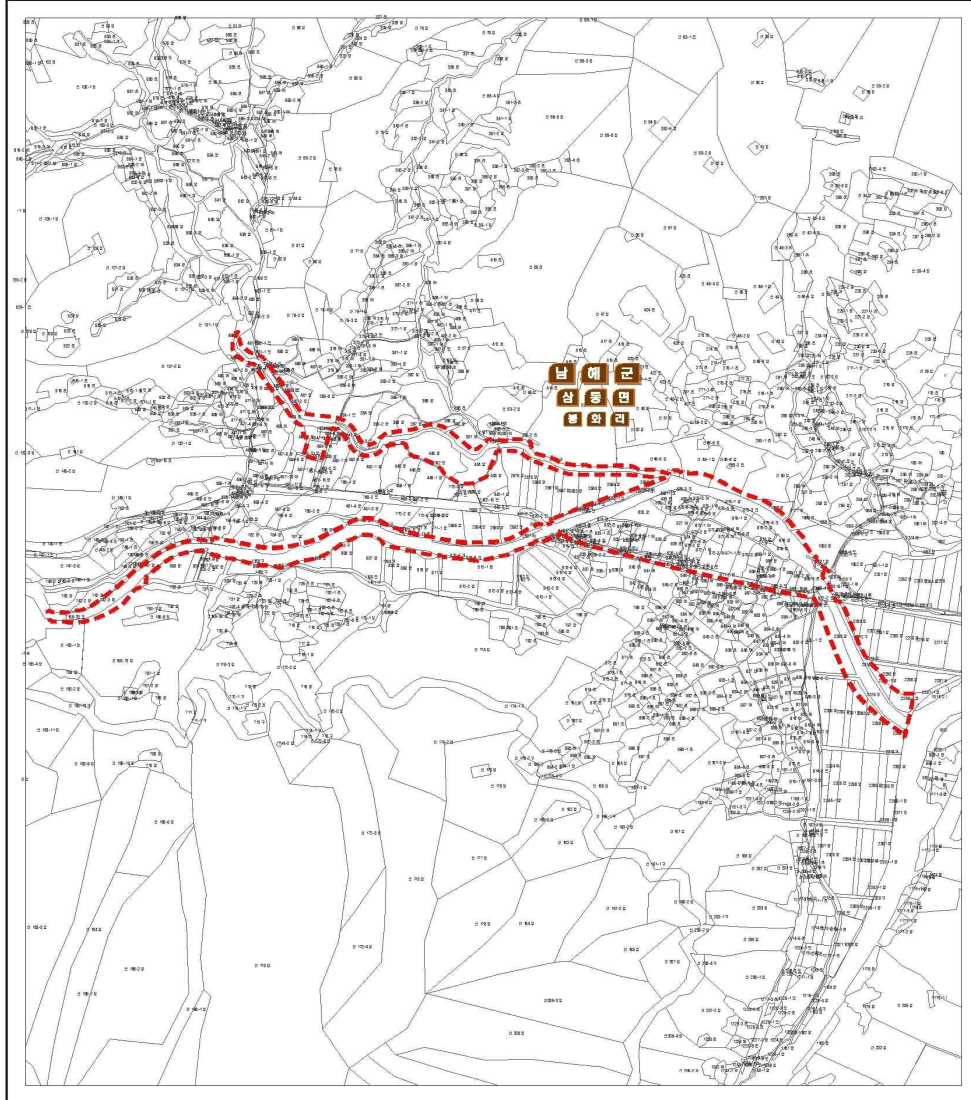
2. 기 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3. 지역·지구 효력 등

-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 : 실음 생략(붙임1 참조)
- 지역·지구 등 효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발생

4. 열람장소 :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삼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지형도면



- ▣ 행정구역 : 남 해 군
- ▣ 지정권자 : 남 해 군 수
-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남 해 군 수

- 범 례**
- ▭ 지 적 선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 명 칭 : 삼 화 지 구
- ▣ 유 형 : 침수위험지구
- ▣ 등 급 : 나 등급
- ▣ 면 적 : 80,912㎡



남해군 고시 제2022-12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5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로 212-10 외 35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87 외 1건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효력 발생일	비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55-860-3642~364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지정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 여

입주구분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효과발생일	도로명주소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옥전리 190-2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옥전로 212-10	20220829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구술길은 시내라는 의미임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288-3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380	20220829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교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288-3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382	20220829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교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1457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62-43	20220826	20090427	남해본섬과 장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51-7	경상남도 남해읍 망포로 10번길 19	20220825	20100915	망포로 10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605-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675번길 10-9	20220825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7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22	20220825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20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13	20220825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18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23	20220825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13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20	20220825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9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26	20220825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21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15	20220825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24	20220825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24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12	20220825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25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14	20220825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6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16	20220825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14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18	20220825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19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11	20220825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17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25	20220825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8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28	20220819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229-16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서부로 1161-27	20220819	20090427	장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장선면 용도리 354-3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199번길 21	20220818	20090427	강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306-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포로 21번길 17	20220817	20090427	망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560-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354	20220817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교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월리 166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남로 89-39	20220816	20090427	내금의 옛 이름을 이용, 양진(양속인들이 살던 진) 너머에 있는 마을이란 뜻임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085-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31번길 23-1	20220816	20090427	남해대로 2431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금승리 758-5, 745, 756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1699-41	20220816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168-1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306	20220811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교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천리 433-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남로 240-20	20220809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천리 56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양해금로 329-41	20220809	20090427	향정리를 이용, 마을 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사기가 들어가는 다섯 군데의 신이 있다하여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봉화리 2345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금암로 179-20	20220809	20090427	내산은 고목도로 간실 등 나무발전에 양장산 최치환신상이 출생한 곳으로 그의 호를 따 금암로라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강리 1379-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397번길 26	20220809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임천리 1219-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포로 10번길 2599	20220804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229-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포로 10번길 21	20220803	20091023	망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821-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94	20220803	20090427	남해본섬과 장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릉리 1249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577-31	20220802	20090427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변 경

영구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표적물번호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서상	비고
건물용도변경	경상남도 남해군 장전면 용산로 489번안길 18-5	경상남도 남해군 장전면 용산로 448번안길 18-3	20220826	20090427	용산로 148번 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건물용도변경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예곡리길 8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예곡리길 87	20220826	20090427	완강기초시월에 대한 인시 진행을 위해 조성되는 남해예곡리마로 이여지는 길임을 분명	

남해군 고시 제2022-125호

창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7일

남 해 군 수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

가. 지정 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m ²)		
창선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37-1일원	침수 위험	나	409,093	홍수시 통수단면 및 제방여유고 부족 하천 인근 제내지측에 주거지 및 농경지가 존재하여 침수 위험이 상존	

나. 지정 지형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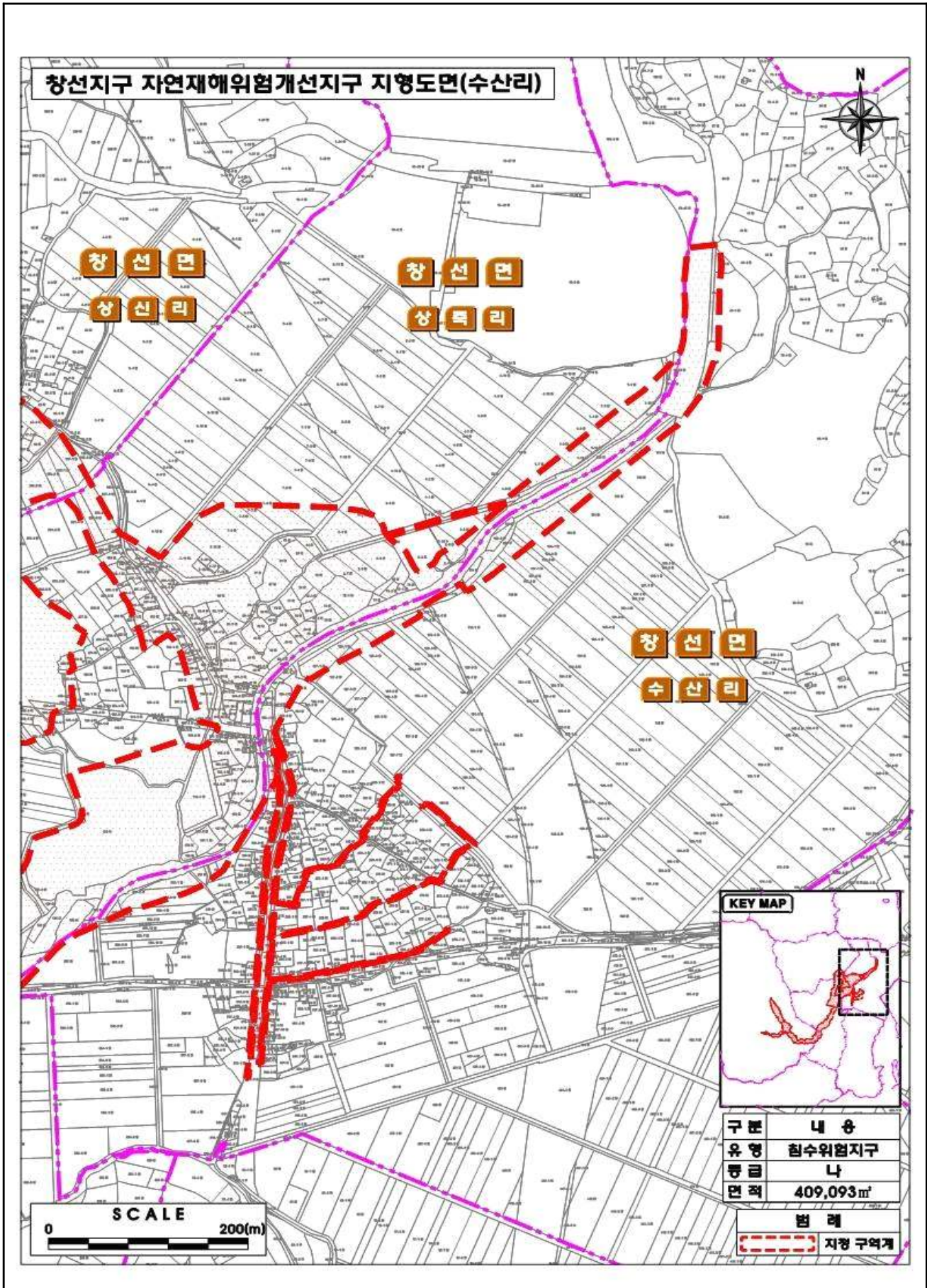
다. 지정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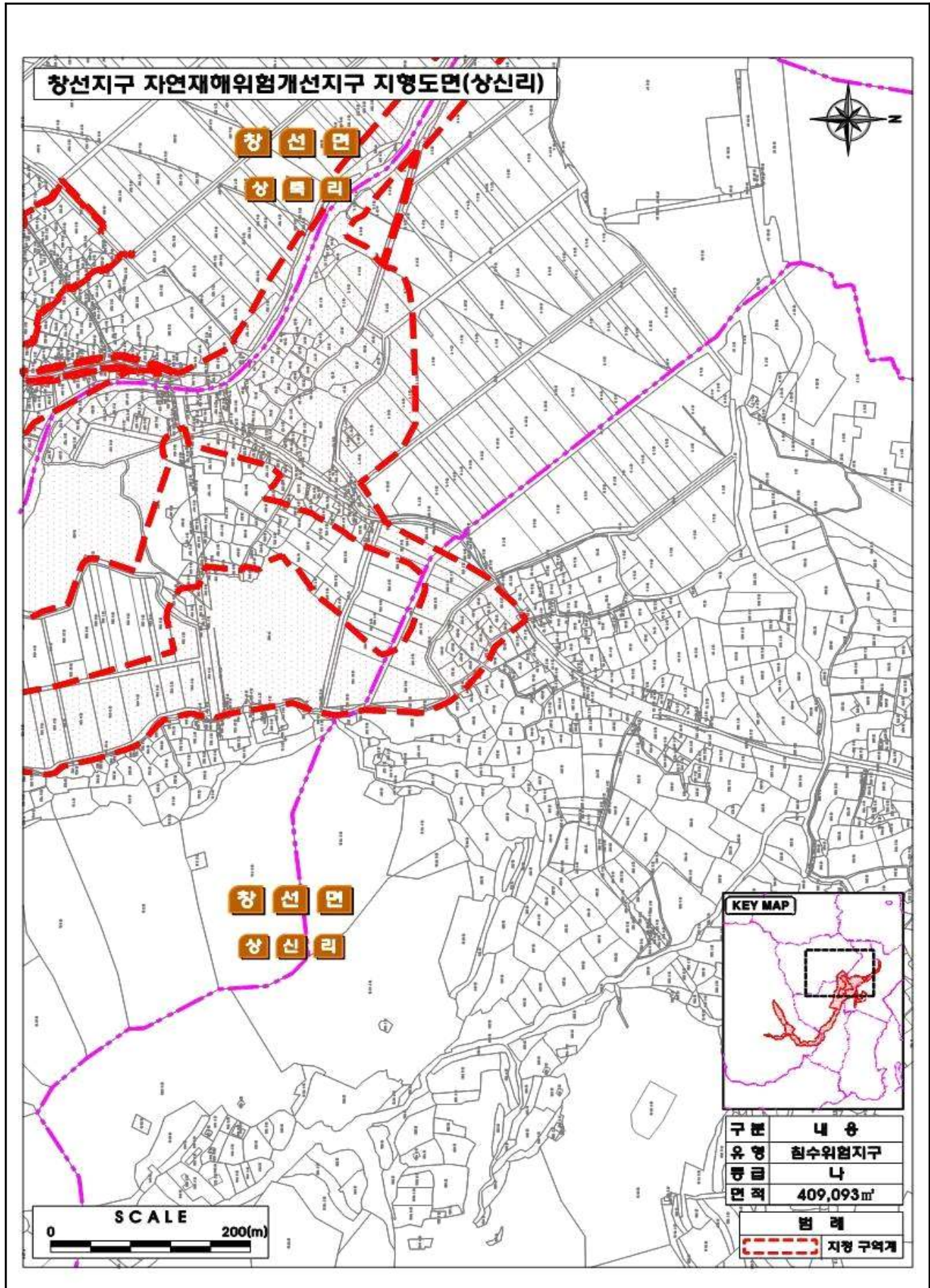
2. 기 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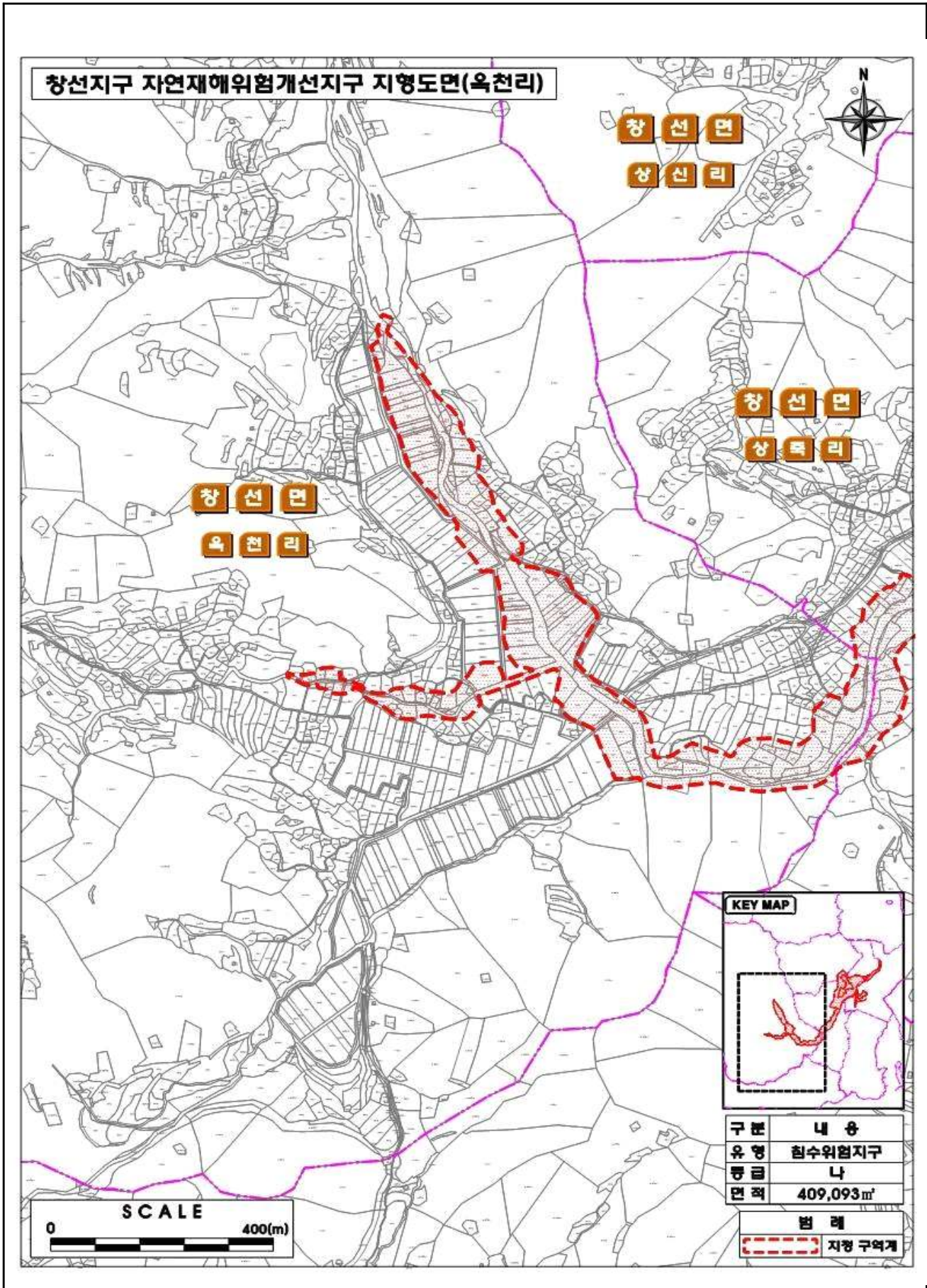
3. 지역·지구 효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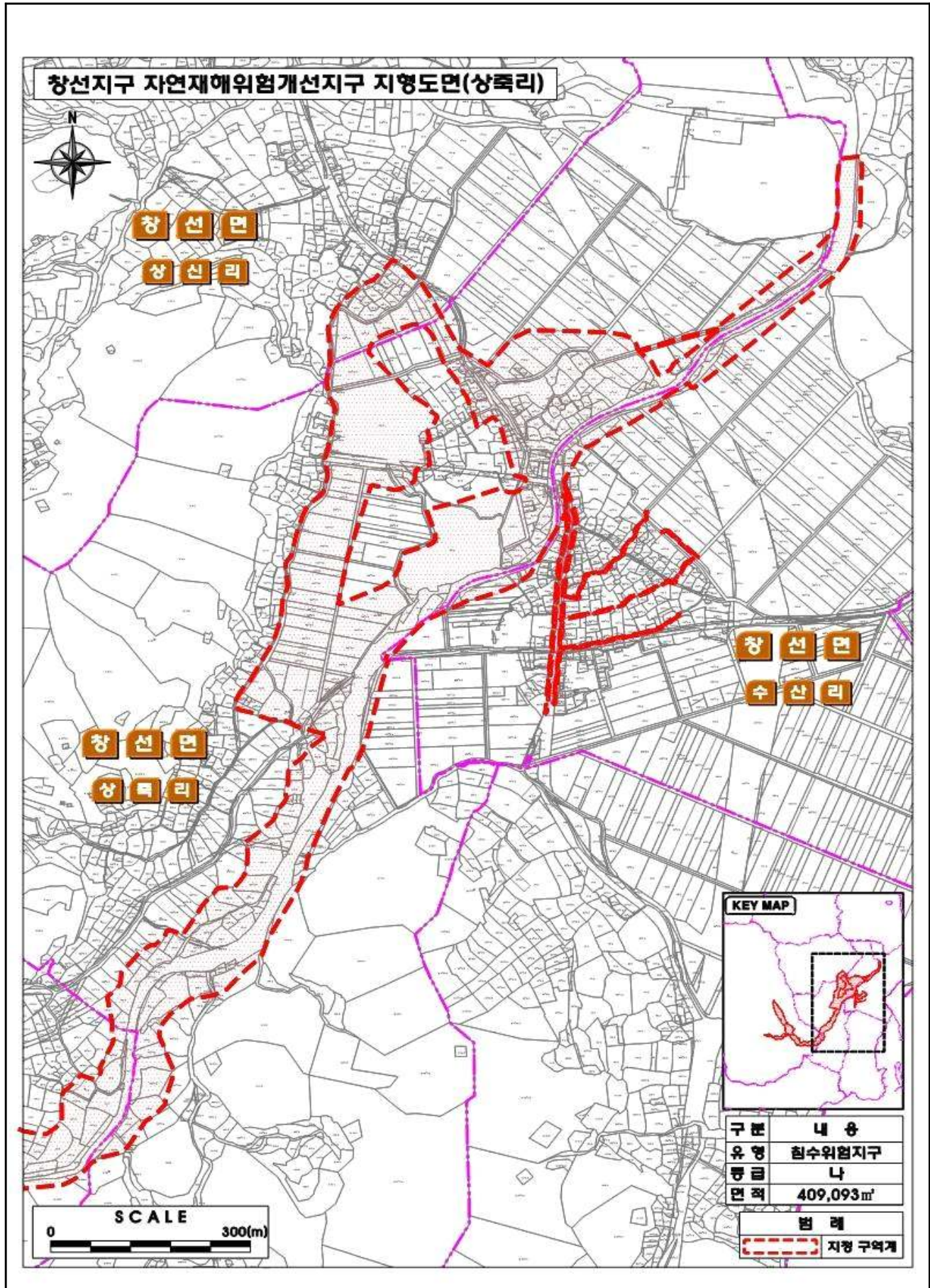
-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 : 실음 생략(붙임1 참조)
- 지역·지구 등 효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발생

4. 열람장소 :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2-126호

문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문항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82조, 「어촌·어항법」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문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도시민의 귀어·귀촌 실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어촌주민과 귀어·귀촌인이 상생하는 마을을 조성하여 어촌인구 증대 도모와 더불어 어촌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어촌경제 활성화 유도
3. 위 치 :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문항마을 일원
4. 사업 기간 : 2021년 ~ 2025년(5년간)
5. 총 사업비 : 3,639백만원(국비 2,548 / 지방비 1,091) *자부담 17별도
6.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7. 사업 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상생교류센터 조성 (건축물 리모델링 A=156㎡, 주차장 A=771㎡ 등)

- 문화누림센터 조성 (건축물 내부·지붕 리모델링 A= 494㎡, 열림마당 A= 681㎡ 등)
- 어울림센터 조성 (건축물 리모델링 A= 397㎡, 외부포장 A= 192㎡ 등)
- 지역소득증대
 - 로컬푸드판매장 조성 (건축물 리모델링 A=54㎡, 안내판 1개소 등)
- 지역경관개선
 - 솔숲쉼터 조성 (마을스토리원 A=60㎡, 전망데크 386㎡ 등)
 - 상생이음길 조성 (진입부 화단정비 A=136㎡, 식재공사 180주, 해설관 12개소 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경영지원 등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4)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별첨

문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편입·사용 토지 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대장 면적(m ²)	편입·사용 면적(m ²)	비 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상생교류센터 조성									
1	남해	설천면	문항리	230	14	대	2,279	2,279	
2	남해	설천면	문항리	230	12	잡종지	141	118	
3	남해	설천면	문항리	230	5	대	37	37	
4	남해	설천면	문항리	230	6	답	256	120	
5	남해	설천면	문항리	230	7	대	366	366	
6	남해	설천면	문항리	230	13	대	162	162	
문화누림센터 조성									
7	남해	설천면	문항리	271	1	창고	1,462	1,406	
8	남해	설천면	문항리	280	3	도로	502	12	
9	남해	설천면	문항리	408	2	도로	628	40	
10	남해	설천면	문항리	410	1	도로	1,101	116	
11	남해	설천면	문항리	1339	2	도로	66	8	
12	남해	설천면	문항리	273	-	구거	616	35	
13	남해	설천면	문항리	1399	-	도로	6,342	6	
어울림센터 조성									
14	남해	설천면	문항리	247	1	대	533	533	
15	남해	설천면	문항리	247	5	잡종지	570	570	
솔숲쉼터 조성									
16	남해	설천면	문항리	230	4	잡종지	303	303	
17	남해	설천면	문항리	230	12	잡종지	141	23	
18	남해	설천면	문항리	228	1	잡종지	1,410	1,280	
상생이음길 조성									
19	남해	설천면	문항리	1248	3	도로	1,493	40	
20	남해	설천면	문항리	1299	1	구거	942	190	
21	남해	설천면	문항리	1399	-	도로	6,342	50	
22	남해	설천면	문항리	1399	5	도로	2,346	166	
23	남해	설천면	문항리	248	1	전	79	20	
24	남해	설천면	문항리	247	2	도로	1,762	30	
25	남해	설천면	문항리	230	15	도로	3,483	25	
				계	25필지		33,362	7,935	

남해군 고시 제2022-127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남해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 1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7일

남 해 군 수

I. 세입·세출결산

1. 총 괄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641,764,694,710	648,921,694,879	520,647,015,829	128,274,679,050
일반회계	570,938,065,380	578,110,175,325	464,187,592,714	113,922,582,611
특별회계	70,826,629,330	70,811,519,554	56,459,423,115	14,352,096,439
상수도특별회계	16,852,780,220	17,091,018,348	13,994,478,470	3,096,539,878
의료급여기금	781,409,000	787,259,004	755,435,964	31,823,04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844,427,000	844,426,151	844,426,15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1,156,000	648,176,684	611,211,890	36,964,794
환경기초시설	38,351,757,110	38,064,197,888	30,811,269,980	7,252,927,908
청사건립	13,355,100,000	13,376,441,479	9,442,600,660	3,933,840,819

2.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641,764,694,710	650,566,708,908	648,921,694,879	118,416,590	1,526,597,439
일 반 회 계	570,938,065,380	579,673,874,564	578,110,175,325	116,470,180	1,447,229,059
특 별 회 계	70,826,629,330	70,892,834,344	70,811,519,554	1,946,410	79,368,380
상 수 도	16,852,780,220	17,149,736,778	17,091,018,348	217,070	58,501,360
의 료 급 여 기 금	781,409,000	787,259,004	787,259,004	0	0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금	844,427,000	844,426,151	844,426,151	0	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소 원 사 업	641,156,000	648,176,684	648,176,684	0	0
환 경 기 초 시 설	38,351,757,110	38,086,794,248	38,064,197,888	1,729,340	20,867,020
청 사 건 립	13,355,100,000	13,376,441,479	13,376,441,479	0	0

3.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641,764,694,710	520,647,015,829	93,239,143,804	27,878,535,077
일 반 회 계	570,938,065,380	464,187,592,714	81,441,830,388	25,308,642,278
특 별 회 계	70,826,629,330	56,459,423,115	11,797,313,416	2,569,892,799
상 수 도	16,852,780,220	13,994,478,470	2,330,155,710	528,146,040
의 료 급 여 기 금	781,409,000	755,435,964		25,973,036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금	844,427,000	844,426,151		849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소 원 사 업	641,156,000	611,211,890	12,374,800	17,569,310
환 경 기 초 시 설	38,351,757,110	30,811,269,980	5,594,373,346	1,946,113,784
청 사 건 립	13,355,100,000	9,442,600,660	3,860,409,560	52,089,780

4. 결산상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28,274,679,050	45,719,731,528	10,922,399,226	35,739,013,050	7,046,193,770	28,847,341,476
일 반 회 계	113,922,582,611	39,434,512,128	7,931,462,610	33,217,855,650	6,842,347,879	26,496,404,344
특 별 회 계	14,352,096,439	6,285,219,400	2,990,936,616	2,521,157,400	203,845,891	2,350,937,132
상 수 도	3,096,539,878	2,107,017,370	223,138,340			766,384,168
의료급여기금	31,823,040					31,823,040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금						
발전소주변지역지 원 사 업	36,964,794	12,374,800			658,770	23,931,224
환경기초시설	7,252,927,908	305,417,670	2,767,798,276	2,521,157,400	203,187,121	1,455,367,441
청 사 건 립	3,933,840,819	3,860,409,560				73,431,259

II.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1. 예산이용 : 없음

2. 예산전용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증감액	전용금액	
			감 액	증 액
일 반 회 계	7건	205,951,000	62,908,000	62,908,000

3. 예산이체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예산액	이체금액	
			감 액	증 액
합 계	288건	142,695,286,150	142,695,286,150	142,695,286,150
일 반 회 계	218건	75,162,259,520	75,162,259,520	75,162,259,520
특 별 회 계	70건	67,533,026,630	67,533,026,630	67,533,026,630

Ⅲ.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43건	3,605,953,000	3,451,305,170		154,647,830

Ⅳ. 재무제표 결산 요약

(단위 : 원)

연도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1년	2,248,372,296,727	15,574,712,288	2,232,797,584,439	409,579,660,021	476,539,321,167	(66,959,661,146)
2020년	2,178,447,578,595	11,273,051,867	2,167,174,526,728	408,531,961,896	459,797,947,882	(51,265,985,986)
총 감	69,924,718,132	4,301,660,421	65,623,057,711	1,047,698,125	16,741,373,285	(15,693,675,160)

Ⅴ. 채권 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2,432,763,427	66,439,746	69,814,299	2,429,388,874
일 반 회 계	2,124,216,060	57,958,000	29,444,800	2,152,729,260
기 타 특 별 회 계	308,547,367	8,481,746	40,369,499	276,659,614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활 금	74,213,687	214,599	34,414,599	40,013,687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234,333,680	8,267,147	5,954,900	236,645,927

Ⅵ. 채무 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소멸액	당해연도현재액
계	해당 없음			
일 반 회 계	0	0	0	0
특 별 회 계	0	0	0	0

VII. 성과보고서 요약

(단위 : 개)

구분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 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미달성 (100% 미만)
합 계	18	97	236	34	131	71

VIII. 기금 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61,876,163,299	14,719,613,255	23,041,122,760	53,554,653,794
중소기업육성기금	1,862,361,047	124,172,930	29,721,050	1,956,812,927
재난관리기금	942,787,255	822,233,550	535,827,270	1,229,193,535
양성평등기금	1,036,444,940	10,387,390	30,000,000	1,016,832,330
식품진흥기금	39,986,700	128,825,350	115,045,600	53,766,450
마늘명품화기금	5,893,143,397	46,271,440	284,203,840	5,655,210,997
육외광고발전기금	20,000,000	50,211,510		70,211,51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196,885,670	1,822,090,070	881,297,000	4,137,678,740
자활기금		904,452,445	1,124,000	903,328,44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884,554,290	10,810,968,570	21,163,904,000	38,531,618,860

IX.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구분	공유재산		정수물품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계		778,815,866,130	1,006건	8,917,194,839
토지	15,391,659㎡	237,167,181,611		
건물	298,518㎡	172,390,322,694		
기타	50,028건	369,258,361,825		

남해군 고시 제2022-1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 1. 하 천 명 : 다천천(지방하천)
- 2. 성 명 : 김태0
- 3. 주 소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185번길 00
- 4. 점용목적 : 진입로 사용
- 5. 점용위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785(1229번지 인근)
- 6. 점용면적 : 145m²
- 7. 점용기간
 - 당초 : 2017. 10. 20. ~ 2022. 10. 19.
 - 변경 : 2017. 10. 20. ~ 2026. 12. 31.

남해군 고시 제2022-1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삼화천, 창선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남해군청)
4. 점용목적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계측기 설치
5. 점용위치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29번지 외 2필지
6. 점용면적 : 9㎡
7. 점용기간 : 2022. 9. 8. ~ 영구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112호

삼천포 천연가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삼천포 천연가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삼천포 천연가스 발전사업
- 나.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89-6번지 일원(제3회처리장 내)
- 다. 규 모 : 1,120MW
- 라. 사업자 / 승인기관 : 한국남동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2.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행정구역	공 램 장 소
2022.08.19.~2022.09.27.	남해군	남해군청 환경물관리단
	고성군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 하이면사무소
	사천시	사천시 향촌동행정복지센터
	통영시	통영시청 환경과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지 역	일 시	장 소
고성군	2022. 8. 31.(수) 10:00	고성군 하이면복지회관
	2022. 8. 31.(수) 14:00	고성군 하일면사무소
사천시	2022. 9. 1.(목) 14:00	사천시 향촌동행정복지센터

4. 주민의견 제출

-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022.10.04까지)
- 나. 제출의견 : 본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
-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5. 기 타

- 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 등은 남해군 홈페이지(www.namhae.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환경물관리단(☎055-860-3254)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243) 및 한국남동발전 건설처(☎070-8898-1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2-1132호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2. 제정이유

-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나.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본원칙(안 제1조 ~ 제3조)
- 나. 군수와 군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제6조)
-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안 제7조 ~ 제9조)

- 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제18조)
- 마.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제19조 ~ 제25조)
-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제29조)
- 사.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8월 26일 ~ 9월 16일까지(21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환경물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환경물관리단)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54, FAX :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환경물관리단 환경정책팀(☎055-860-32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남해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남해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경상남도 계획과 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남해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

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9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 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

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5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남해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6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시책·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교육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군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경영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군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비영리 법인·단체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 및 대책으로 본다.

제4조(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해군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남해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22-1137호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2.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원활한 공익 신고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각종 미비사항 보완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 개정

3. 주요내용

- 가. 공익신고 접수절차 명확화 (안 제12조)
- 나. 공익신고 조사처리기한 및 공익신고자 안내사항 명확화 (안 제18조)
- 다. 국민권익위원회 징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규정 (안 제26조)
- 라. 보상금 지급 사유 및 신청기간 개정사항 반영 (안 제29조)
- 마. 포상금 지급 사유 개정사항 반영 (안 제30조)
- 바. 구조금 지급 사유 개정사항 반영 (안 제31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9월 1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성과담당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2,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성과담당관 감사팀(☎ 055-860-305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예규 제 호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접수증을 내어주어야” 를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자가” 를 “사람이”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조사)” 를 “(공익신고의 조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장” 을 “1회 연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을 “제7호서식의” 로, “안내문을” 을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로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 을 “사건”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을 “행정처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사·수사” 를 “조사” 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법 제9조제5항” 을 “법 제9조제6항” 으로, “법 제9조제7항”

을 “법 제9조제8항” 으로, “재조사·재수사” 를 “재조사” 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 을 “그 사실” 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군수” 를 “누구든지” 로, “소속직원” 을 “공익신고자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는 소속직원이” 를 “누구든지” 로, “소속직원에게” 를 “공익신고자등에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는” 을 “공익신고책임관은” 으로, “소속직원” 을 “공익신고자등”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소속직원이” 를 “공직자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직원” 을 “공직자” 로 한다.

제25조 중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를 “공익신고자등이 신고” 로, “공익신고자로” 를 “공익신고자등으로” 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 를 “공익신고자등” 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에 대한” 을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를 “공익신고자등에게” 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에서 처리한” 을 “내부 공익신고자의” 로, “공익신고자에게” 를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처분” 을 “판결” 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년” 을 “3년” 으로 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따른 환수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또는” 을 “사람 또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에” 를 “사람에”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 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 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를 “공익신고자등과 그”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 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제5호, 제18조제5항, 제18조제6항, 제19조제2항,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 를 각각 “위원회” 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피 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www.clean.go.kr)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별지 제11호서식]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시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다른 기관 신고, 또는 다른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 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한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범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재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입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2-1138호

월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월포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0일

남 해 군 수

1. 목적 : 해안시설의 지반고가 낮아 태풍 발생시 해일범람 및 월파에 의한 도로시설 및 주거지 침수 등 재산 피해 우려가 있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2. 8. 30. ~ 2022. 9. 12.(14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2. 8. 30. ~ 2022. 9. 12.(14일간)
4.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월포항	남면 석교리 149-5	해일 위험	나	5,850	해안시설의 지반고가 낮아 태풍 발생시 해일범람 및 월파에 의한 도로 시설 및 주거지 침수 등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	당초
	남면 석교리 149-5 ~ 당항리 31-6	해일 위험	나	46,334		변경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월포항	2022년 ~ 2024년	7,178	- 선착장 철거 L= 50m - 방파제 신설 L= 100m	당초
월포항	2022년 ~ 2026년	30,500	- 방파제 신설 L= 200m - 잠재 신설 L= 130m - 방파제 연장 L= 50m	변경

※ 사업시기 및 내용은 현장여건, 사업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비 사업 완료 후 지구지정 해제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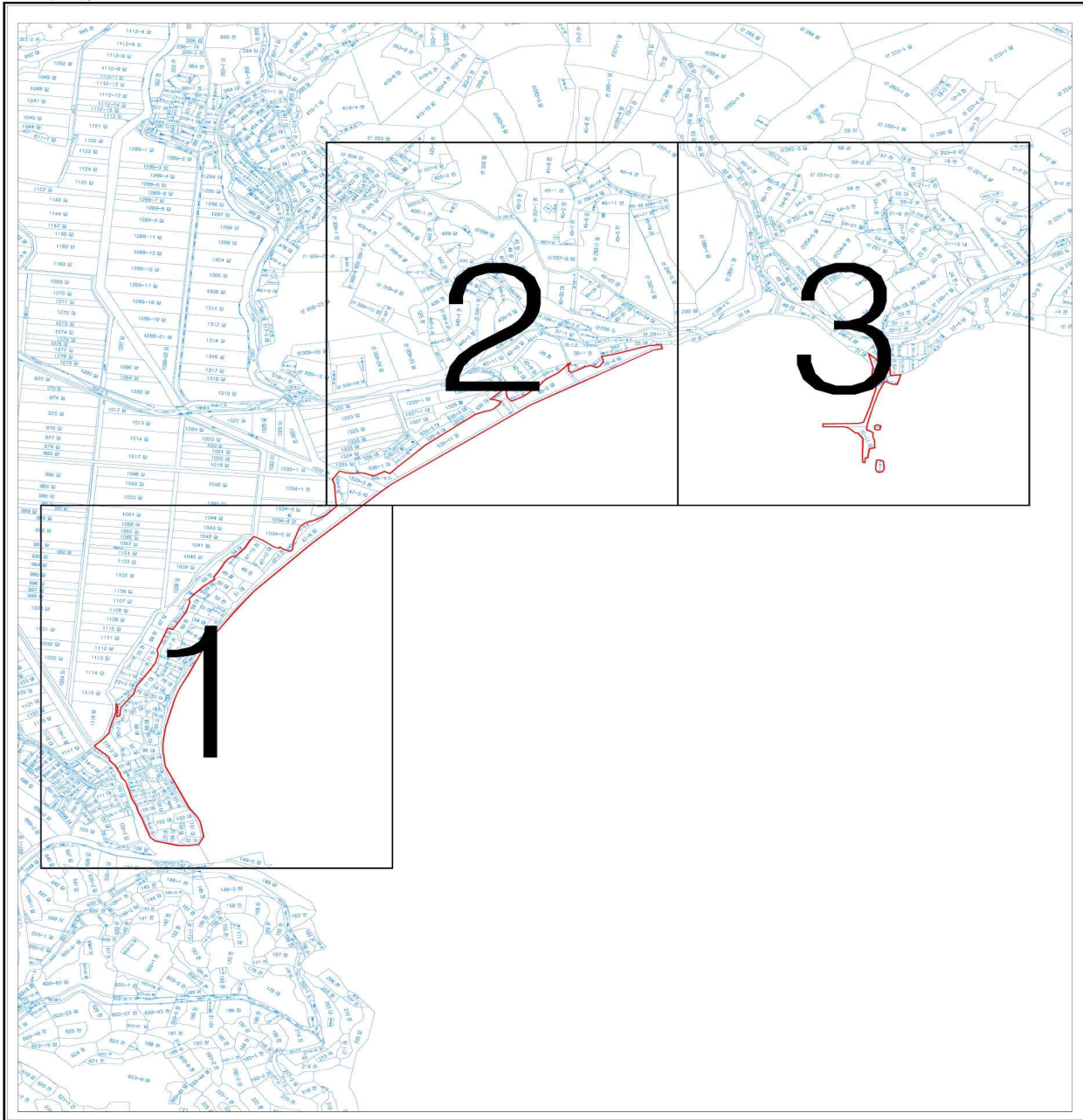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청 재난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다. 기타 필요사항 등
-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편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전화 : 055) 860-3294
-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고지도(총괄)

1 : 5,000 역척도



- 행정구역 : 남 해 군
- 지정권자 : 남 해 군 수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남 해 군 수

- 명 칭 : 월포항 지구
- 유 형 : 해일위험지구 및 해안침식위험지구
- 등 급 : 나등급
- 면 적 : 46,334㎡

범 레

- 지적 선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남해군 공고 제2022-1144호

남해군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 시행 공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제도권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남 해 군 수

1.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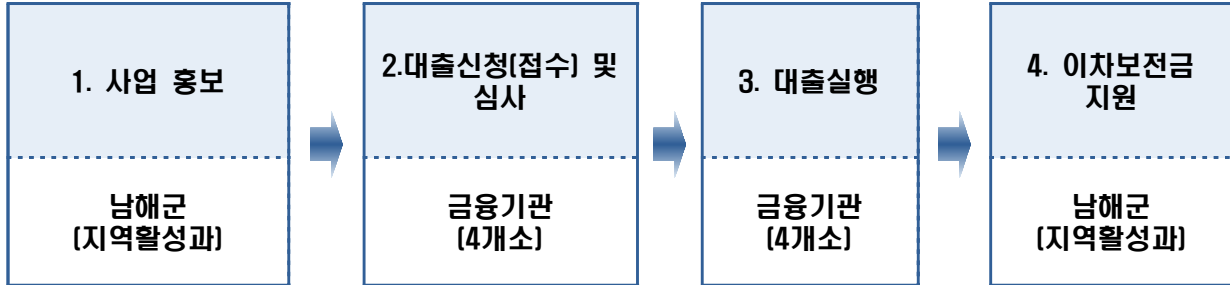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중 제도권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액 금융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지속 및 경기침체 피해 최소화

2.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2. 9. 1 ~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남해군에 사업자등록을 둔 저신용(신용등급 6~10등급), 저소득 소상공인(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지원방법 : 금융기관 협약을 통한 대출 및 이자 전액 지원
 - 대출방법 : 무담보, 무이자 대출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3백만원
 - 협약 대출금리 : 7.5%(이자 전액 지원)
 - 대출기간 : 1년
 -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관 : 남해신용협동조합, 새남해새마을금고, 미송새마을금고, 창선새마을금고

3. 대출신청 절차



○ 접수처

- 남해신용협동조합 ☎ 055-863-3611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5번길 5, 남해신협 본점 및 전 지점】
- 새남해새마을금고 ☎ 055-867-372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59, 새남해새마을금고 본점 및 전 지점】
- 미송새마을금고 ☎ 055-867-6488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6번길21-5, 미송새마을금고 본점 및 전 지점】
- 창선새마을금고 ☎ 055-867-3588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81, 창선새마을금고 본점 및 전 지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출액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대출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유의사항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지역경제팀(☎055-860-3193) 또는 남해신용협동조합(☎055-863-3611) 새남해새마을금고(☎055-863-3721), 미송새마을금고(☎055-863-6488), 창선새마을금고(☎055-867-3588)로 문의

남해군 공고 제2022-114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이 시행하는 상주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년 7월 26일 수용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1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상주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2.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
- 3. 사업장 위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326-9 일원
- 4. 사업 내용 : 급경사지 정비 L= 1,640m
- 5. 공고 기간 : 2022. 8. 31. ~ 2022. 9. 14.
- 6. 수용재결기관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 7.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 8.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고

□ 남해 상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공시송달 대상(토지)

일련 번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남해군 상주면)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1	상주리	산326-9	도	도	833	833	박진아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	-	-

○ 사업현황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장 위치	비고
남해 상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남해군수재난안전과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325번지 일원	

남해군 공고 제2022-1157호

2022년 남해군 해수욕장 야영장 수탁 단체 선정 공고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남해군 해수욕장 야영장 수탁 단체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남 해 군 수

1. 선정기준

○ 근거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8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 선정방법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기관·단체 중 남해군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로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2. 선정결과

○ 선정일자: 2022. 8. 31.

○ 선정결과

연번	야영장명	수탁단체	기간	비고
1	상주은모래비치캠핑장	상주번영회	2022.8.22.~12.31.	소급적용
2	송정솔바람야영장	송정번영회	2022.9.1.~10.31.	
3	두곡해수욕장야영장	두곡번영회	2022.9.1.~12.31.	
4	월포해수욕장야영장	월포번영회	2022.9.1.~12.31.	
5	사촌해수욕장야영장	사촌번영회	2022.9.1.~11.30.	

남해군 공고 제2022-117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김보0	주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79번길 00
	소하천명	진목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113번지 외 3필지		
	면적	196㎡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 9. 8.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상수관로 설치(L=392m)		

남해군 공고 제2022-1178호

공시송달 공고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기타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량	기간	비고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상주면 양아리 산290 일원	급경사지 정비 L=250m	2022. 10. ~ 2023. 12.	

2. 사업시행자

- 가) 시행자 :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3.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91-2번지 외 6필지 4,233㎡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붙임 조서 참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함

4.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2. 9. 7. ~ 2022. 9. 21.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다) 이의신청 : 남해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보상담당으로 서면제출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22년 10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 이사, 수령거부,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 안전과 자연재난팀(☎055-860-32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토 지 소재지	소 유 지 번	지 목	면 적 (㎡)	소유자 현황				비고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상주면 양아리	산291-2	임	1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OO	박태O			
2	"	산289-2	임	880	부산광역시 서구 괴정동 OO	김옥O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OO	김성O	

남해군 공고 제2022-117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해운건설 이인0	주소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로 00
	소하천명		오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17(1337인근)		
	면적	30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 2022. 4. 18. ~ 2022. 9. 5. 변경 : 2022. 4. 18. ~ 2022. 10. 5.		
	목적 및 사유	오동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따른 자재 임시야적		

남해군 공고 제2022-118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 (재난안전과장)	주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남해군청)
	소하천명		신비천, 문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남해읍 평리 1594-15번지 외 2필지		
	면적	1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 9. 8. ~ 영구		
	목적 및 사유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관련 계측기 설치		

남해군 공고 제2022-1191호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 (안 제3조 ~ 제17조)
-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18조)
-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안 제19조)
- 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0조 ~ 제2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9월 14일 ~ 10월 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우) 52430

2) 연락처

- 전화 055-860-3116, 팩스 055-860-3737

- 이메일 ejchoi92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055-86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해군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군이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부자”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말한다.
4. “답례품”이란 군이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지역 화폐, 관광 입장권 등 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답례품 선정위원회) 군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답례품 선정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그 중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남해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 5. 기타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 ⑤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2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남해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2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은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및 제25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째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계좌가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영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